

**얼티밋 파이팅 챔피언십(ULTIMATE FIGHTING CHAMPIONSHIP) 반도핑
정책에 따른 반도핑 정책 위반 및 기타 분쟁에 관한
얼티밋 파이팅 챔피언십 중재 규칙**

2016년 11월 1일 시행

A.1 중재의 대상

1.1 UFC(Ultimate Fighting Championship)는 UFC 반도핑 정책("정책")에 명시된 규칙, 정책 및 절차를 채택했다. 제기된 모든 반도핑 정책 위반("ADPV") 또는 이 정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기타 분쟁이나 정책에 명시된 반도핑 규칙 위반 주장은 본 정책 및 이러한 중재 규칙에 기술된 결과 관리 과정을 통해 해결한다. 정책에 명시된 바와 같이 UFC는 결과 관리에 대한 책임을 미국반도핑기구("USADA")에 위임했다.

1.2 본 규칙에 따른 중재는 (i) USADA의 반도핑 정책 위반(ADPV) 주장 또는 본 정책에 의거한 기타 모든 UFC 또는 USADA 결정에 대한 항소나 이의 제기, (ii) UFC 또는 USADA와 수석 중재인이 UFC가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며 적격한 것으로 결정하고 수석 중재인이 중재인 임명에 동의하는 데 분쟁이 있으면 선수, 선수지원요원 및 기타 관계자(이하 "중재 신청인")가 항소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배타적인 포럼이 된다.

1.3 에서 논하는 사항 이외의 중재 신청은 중재 신청인이 본 정책에 따른 위반, 불만 또는 분쟁을 합리적으로 인지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권리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A.2 MGSS

McLaren Global Sport Solutions Inc.("MGSS")가 본 중재 규칙을 관장한다.

A.3 MGSS 중재인 명부

MGSS는 이 정책에 의거하여 발생하는 반도핑 정책 위반(ADPV) 항소 또는 기타 이의 제기나 분쟁에 대한 심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MGSS가 선정한 중재인들의 명부를 작성, 유지, 공표할 것이다. MGSS는 자유재량으로 수시로 중재인 명부를 수정하고

재공표할 수 있다. MGSS는 CAS(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중재인이거나 중재인을 역임했고 MGSS의 의견에 따라 스포츠 및 대체 분쟁 해결 절차(ADPV 문제에 대한 전문 지식 포함)와 관련하여 인정받는 역량을 보유한 개인만을 중재인 명부에 포함한다. 이 명부에는 세계 각지의 대표를 포함한다.

Richard McLaren이 수석 중재인으로 활동하며 본 중재 규칙에 명시된 기능을 수행한다.

A.4 항소 통지 및 중재 신청

USADA의 반도핑 정책 위반(ADPV) 주장에 항소하기 위한 중재 절차는 중재 신청인이 위반 혐의에 대한 통지를 수령한 후 10일 이내에 중재 신청인이 본 규칙에 설명된 중재 절차를 통해 USADA의 결정에 항소하기를 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서면 항소통지서를 USADA에 송달하여 중재 신청인에 의해 개시된다. 그러면 USADA는 MGSS 중재 신청인용 중재 신청서를 중재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중재 신청인은 중재 신청인용 중재 신청서를 수령한 후 10일 이내에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2,500달러의 중재 신청비와 함께 MGSS에 제출해야 한다(중재 신청서 사본을 USADA에 제출). 중재 신청인이 항소 통지서 또는 중재 신청서를 중재 신청비와 함께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USADA 결정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중재 신청인의 항소 권리가 상실된다. 중재 신청인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MGSS로부터 중재 신청비 면제 또는 감경을 요청할 수 있다.

A.5 중재 신청 변경

중재 신청인이 새롭거나 다른 주장 또는 방어를 제기하려는 경우 MGSS 및 USADA에 해당 주장 또는 방어에 대한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중재인이 임명된 후, 당사자들의 상호 합의 또는 중재인(들)의 명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롭거나 다른 주장 또는 방어를 제출할 수 없다.

A.6 중재인 임명

6.1 중재 신청인의 중재 신청서를 수령한 후 수석 중재인은 사건 심리를 위해 MGSS 명부에서 단독 중재인을 지명한다. 해당 단독 중재인은 수석 중재인이 될 수도 있다. 단독 중재인이 선임 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MGSS 명부에서 선정된

3명의 중재인 패널이 해당 사안을 심리하도록 일방 당사자가 서면으로 선택하지 않으며 단독 중재인에 의해 심리 절차가 진행된다. 해당 선정에는 MGSS 명부에서 두 번째 중재인 지명이 포함된다.

6.2 두 번째 중재인 지명 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상대방은 세 번째 중재인을 지명해야 한다. 중재인의 각 지명은 상대방에게 사본과 함께 MGSS에 송부되어야 한다. 3명의 중재인이 임명된 경우 수석 중재인이 임명한 중재인이 중재위원회의 회장이 된다.

6.3 규칙 A.13에 명시된 중재인 수락 및 기피 절차에 따라 임명된 3명의 중재인이 중재 절차를 진행한다. 중재인의 모든 결정은 다수결로 결정된다.

A.7 중재 방법, 장소 및 날짜

중재 심리는 당사자의 합의나 중재인의 지시에 따라 전화, 화상 회의 또는 직접 대면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그 외 모든 절차는 전화로 이루어진다. 중재가 직접 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중재인이 정당한 사유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중재 장소는 미국 콜로라도 주 덴버이다. 중재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해당 시간이 연장되거나 일방 당사자가 예외적 상황을 표시하고 중재인이 연장을 명령하는 경우가 아닌 한 중재인 임명 완료 후 90일 이내에 1회에 걸쳐 이루어진다. 심리 절차는 중재 신청인이 예정된 시합에 출전하기 전에 중재 신청인의 자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A.8 조정

당사자 일방의 요청이 있으면 수석 중재인(또는 수석 중재인이 중재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 수석 중재인이 임명한 다른 중재인)은 당사자들과 조정 회의를 진행하여 당사자들에게 사건의 시비를 평가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A.9 심리 전 절차

심리 전 회의 동안 중재인과 당사자는 다음 사항을 논의한다: 당사자들의 주장 및 방어에 대한 필요한 설명, 임시 구제조치의 요청 여부, 심리를 대면, 전화 또는 화상 회의로 진행할지 여부, 선서진술서와 당사자가 제기한 다른 증거 관련 쟁점으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 날짜 일정 및 예상 시간, 심리 전에 요청할 수

있는 요약문서 제출 일정 및 서류 교환과 증인 확인을 위한 일정 논의, 당사자 또는 중재인이 제기하는 기타 모든 문제. 어떠한 증거 개시도 허용되지 않지만 중재인이 사건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중재인이 판단하는 경우 중재인은 문서 교환이나 제출을 지시할 수 있다. 중재인은 또한 법원을 통해 시행되는 문서 제출 및 증인 출두를 위한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A.10 심리

10.1 각 당사자는 심리를 포함한 절차의 모든 과정과 관련하여 자비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통역가가 필요한 *중재 신청인*은 자비로 통역사를 제공해야 한다. 통역가 자격에 관한 분쟁은 중재인이 결정한다. 통역가에 대한 비용은 요청 당사자가 직접 지급해야 한다.

10.2 심리는 세계도핑방지규약 제8조에 명시된 원칙을 존중하며 긴급성, 당사자에 대한 잠재적인 비용, 증거제출에 관한 분쟁의 세부 사항을 고려하여 수석 중재인과 협의 하에 중재인이 결정한 형식으로 진행된다. 중재인은 당사자가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우받으며, 증인을 부르고 심문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사건을 제출하거나 다른 당사자의 사건에 답변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부여받도록 절차를 확립할 권한을 가진다. 형식 및 절차와 관련된 중재인의 모든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다.

10.3 본 *정책*에 기술된 실질적 규칙은 절차 전반에 걸쳐 적용된다.

10.4 입증, 추정 및 추론의 부담과 방법은 *정책*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10.5 중재인은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공식적 증거 규칙을 준수할 필요는 없다. 심리 전 회의에서 선서진술서에 의한 증거가 인정될 수 있다고 결정되는 경우 중재인은 상황에서 적절한 것으로 간주하는 해당 증거에 가중치를 부여한다.

10.6 증인은 선서 하에 증언해야 한다.

10.7 심리에 대한 속기록 또는 녹음을 요청하는 당사자는 심리가 열리기 최소 15일 전에 MGSS에 요청해야 한다. MGSS는 요청에 따라 속기록 또는 녹음을 준비하고 모든 당사자에게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USADA*가 속기록 또는 녹음을 요청하는 경우 *UFC*가 비용을 부담한다. *중재 신청인*이 속기록 또는 녹음을 요청하는 경우 비용은 당사자 간에 균등하게 분할하여 부담한다.

10.8 적절한 통지 후에 당사자가 심리에 출석하지 않거나 변호인이 없더라도 당사자 없이 심리가 진행될 수 있다. 본 정책의 제3.2.5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USADA 또는 중재인의 요청을 받은 후에 증언을 위해 심리에 출석하지 않는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 대하여 불리한 추정이 제기될 수 있다.

A.11 심리 후 문제

11.1 중재인은 공정하고 공평하며 본 정책 및 세계도핑방지규약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구제책을 부여할 수 있다.

11.2 각 사건은 자체 사실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중재인은 이전 결정에 구속되지 않는다.

11.3 결정에 대한 추론을 포함한 중재인의 판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심리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중재인의 재량에 따라 중재인은 판정에 대한 서면 근거를 제공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판정을 전달할 수 있다. 중재인은 판정 배포 후 사무 실수와 기한에 대한 계산 착오를 정정할 권한이 있다.

11.4 중재인 3명의 결정이 모두 다른 경우 해당 판정은 중재위원회 회장이 단독으로 내린다.

11.5 중재인은 최종 판정 외에 중간 임시 또는 부분 결정, 명령, 판정 등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11.6 중재인의 판정이 전달되기 전에 심리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나 중재인의 주도로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다.

11.7 중재인이 제재 기간이나 제재 시작 날짜를 결정하는 데 있어 실수를 범한 경우, 판정을 전달한 후 7일 이내에 이에 대한 구제 요청이 이루어지면 중재인은 판정을 정정할 수 있다.

A.12 비밀유지

이 규칙에 따른 중재는 기밀이며 당사자와 중재인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중재 개시부터 판정이 내려지거나 중재가 다른

방식으로 완료될 때까지 당사자, 중재인 또는 MGSS는 본 정책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 과정에서 생성된 어떠한 정보도 중재와 관련이 없는 UFC 이외의 사람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A.13 중재인에 관한 추가 규정

13.1 사건에 지명된 중재인은 자신의 임명과 관련하여 모든 이해충돌 또는 잠재적 이해충돌과 자신의 임명과 관련하여 편향적이라고 합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즉시 당사자, 수석 중재인 및 MGSS에 공개한다. 어떤 중재인이 중재에 계속 참여하는 것에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수석 중재인은 해당 이의 제기에 대해 결정한다. 수석 중재인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다. 수석 중재인에 대한 모든 이의 제기는 MGSS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13.2 한 당사자가 지명한 중재인이 지명을 거절하거나 중재인이 이해충돌 때문에 중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수석 중재인이 결정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5일 이내에 다른 중재인을 지명해야 한다. 심리가 개시되기 전에 언제든지 중재인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중재인을 수석 중재인이 지명했다면 수석 중재인이 대체 중재인을 지명한다. 어느 한 당사자가 지명한 중재인인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가 5일 이내에 대체 중재인을 지명한다. 심리가 개시된 후에 공석이 생기면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거나 수석 중재인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충원하지 않는다.

13.3 중재인은 MGSS 명부에 임명되면 공정하고 본 정책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인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로 약속하는 선언서에 서명해야 한다. 모든 중재인은 어느 당사자가 지명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중립적이어야 한다.

13.4 어떠한 당사자 또는 당사자를 대리하는 어떠한 사람도 중재와 관련하여 잠재적인 중재인 후보나 직무를 수행 중인 중재인과 *일방적인* 통신을 주고받을 수 없다.

13.5 중재인은 MGSS가 정한 대로 시간당 325달러의 보수를 받는다. 단일 중재인에 대한 중재인 수수료와 경비는 UFC가 지급한다. USADA가 3명의 중재인 패널로 진행하기로 선택하면 UFC는 모든 중재인의 수수료와 경비를 지급한다. 중재 신청인이 3명의 중재인 패널로 진행하기로 선택하면 중재인 3명 모두의 수수료와 경비는

당사자 간에 균등하게 분할하여 부담한다.

13.6 심리 연기로 인해 중재인이 청구하는 수수료는 연기를 요청한 당사자에게 부과된다.

13.7 USADA의 반도핑 정책 위반(ADPV) 주장에 대한 중재 신청인의 항소 결과 중재인에 의해 "위반 없음" 또는 "과실 또는 부주의 없음"으로 밝혀지면 중재 신청인이 중재 절차 개시를 위해 지불한 중재 신청비는 중재 신청인에게 전액 환불된다. 앞서 기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중재 신청인은 상기 13.5 및 13.6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또는 비용에 대해 책임을 진다.

13.8 중재인에 대한 비용은 당사자가 직접 지급하지 않고 MGSS가 지급한다. 그런 다음 MGSS는 당사자들에게 비용을 청구한다.

13.9 본 정책에 따른 절차에서 MGSS나 중재인은 중재와 관련된 사법절차에서 필요 당사자가 아니다. MGSS의 중재인 및 고위 임원은 법원이나 행정절차에서 자격을 갖춘 증인이 아니다. 어떠한 당사자도 이 규칙에 따라 중재 과정에서 중재인, 수석 중재인 또는 MGSS 고위 임원 및 직원이 작성한 메모, 기록 또는 문서를 소환하거나 요구할 수 없다.

13.10 MGSS나 중재인은 본 중재 규칙에 따라 수행된 중재와 관련하여 어떠한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도 당사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각 중재 신청인은 UFC 이벤트 참가 조건으로 MGSS, 수석 중재인, UFC, USADA 및 이러한 기관의 각 이사, 임원, 회원, 관리자, 직원, 에이전트 또는 대리인을 연대하여 개별적으로 및 공적 자격으로 본 규칙이나 정책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결정, 작위 또는 부작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률 또는 형평법에 의거한 모든 청구, 요구, 손해 및 소송 사유로부터 면책한다. 단, 사기나 고의적인 작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A.14 기타 규칙

14.1 모든 중재 절차는 영어로 진행된다.

14.2 통지. 본 규칙의 모든 목적상 중재 신청인에 대한 통지는 UFC 법무 부서에 제출된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가장 최근 우편 주소로 익일배송을 통해

전달되거나 UFC 법무 부서에 제출된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가장 최근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어 전달될 때 발효한다. 실제 통지는 다른 방법으로도 달성할 수 있다.

14.3 모든 서류는 중재인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동시에 상대방과 MGSS에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서류는 이메일이나 특송 서비스로 송달할 수 있다.

14.4 중재인은 중재 합의의 존재, 범위 또는 유효성에 관한 이의를 포함하여 중재인의 권한 및 관할권에 대해 판단할 권한을 가진다. 당사자는 *중재 신청인*의 중재 요청서에서 중재 규칙의 적용 또는 중재인의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의는 포기된다.

14.5 중재인은 자유재량에 따라 수석 중재인과 협의를 거쳐 사건에서 발생하는 특정 기술적 문제에 대해 중재인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전문가를 고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해당 전문가에 대한 비용은 당사자들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14.6 중재인은 중재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수석 중재인과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다.

A.15 중재 신청비 환불 일정

본 중재 규칙에 따라 개시된 중재에 대해 MGSS는 환불 불가능한 최소 250달러의 수수료를 제외한 중재 신청비에 대한 환불 일정을 제공한다. 최소 수수료 요건을 조건으로 환불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 a. 상기 규칙 A.6.1에 명시된 바와 같이 수석 중재인이 단일/최초 중재인을 임명하기 전에 사건이 해결되거나 철회되는 경우 환불 불가능한 최소 수수료의 기초 공제 후 중재 신청비의 100%가 환불된다.
- b. 수석 중재인이 단일/최초 중재인을 임명한 후에 심리 전 일정 협의 회의를 열기 전에 사건이 해결되거나 철회되는 경우 환불 불가능한 최소 수수료의 기초 공제 후 중재 신청비의 50%가 환불된다.
- c. 심리 전 일정 협의 회의 후에 어떤 경합 신청이나 심리 전 요약문서를

제출하기 전에 사건이 해결되거나 철회되는 경우 환불 불가능한 최소 수수료의 기초 공제 후 중재 신청비의 25%가 환불된다.

중재인이 분쟁 사안에 대해 심리 전 판결을 제출하도록 요청받았거나 경합 신청이나 심리 전 요약문서를 제출한 후에는 환불이 되지 않는다. 해당 사건이 최종적으로 해결 또는 철회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속 해결 사건에 대해서는 환불이 인정되지 않는다.

A.16 준거법

미국 네바다 주법이 본 규칙에 따른 중재에 적용되는 준거법이다.

A.17 수정

이 UFC 중재 규칙은 UFC와 USADA가 수시로 수정할 수 있다.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모든 개정안은 UFC의 반도핑 웹 사이트(UFC.USADA.org)에 게시된 후 3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각 선수는 UFC의 반도핑 웹 사이트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본 정책과 기타 반도핑 관련 정책의 최신 버전을 검토할 책임이 있다.